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1472호 2023년 6월 7일(수)

고 시

○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····· 2

입법예고

○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6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◉속초시 고시 제2023-74호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종근이 시행하는 속초시 금호동 617-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7일

속초시장

1. 사업의 명칭 : 속초시 금호동 617-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주체의 성명·주소
   ○ 사업주체 및 대표자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종근
   ○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)
3.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
   ○ 위치 :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17-21 외 31필지
   ○ 면적 : 39,970㎡
4. 건설주택의 규모
   ○ 건축면적 : 6,784.72㎡
   ○ 연면적 : 181,160.51㎡
   ○ 주건축물수 : 8동
   ○ 지하층수/지상층수 : 지하 3층 / 지상 27 ~ 33층
   ○ 총세대수 : 1,024세대
5. 사업시행기간 : 2023. 12. 30. ~ 2026. 12. 30.(예정)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   ○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   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(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)의 결정
7.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(☏033-639-2456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합니다.

붙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협의조서 1부.

< 붙임 >

1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.1.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역내 면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43,045	-	43,045	100.0	-
제3종일반주거지역	39,970	-	39,970	92.9	공동주택
자연녹지지역	3,075	-	3,075	7.1	녹지

1.1.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위치	용도지역	면적(㎡)	용적률(%)	변경사유
-	속초시 금호동 617-21번지 일원	제3종일반주거지역	39,970	300% 이하	• 지적 현황측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상 선형변경(면적 변경없음)
		자연녹지지역	3,075	100% 이하	

2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2.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2.1.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-	금호5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금호동 617-21번지 일원	43,045		43,045	-

2.1.2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위치	면적(㎡)	결정사유
변경	-	속초시 금호동 617-21번지 일원	43,045	• 지적 현황측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상 선형변경(면적 변경없음)

2.2.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2.2.1.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43,045	-	43,045	100.0	
공동주택용지	39.970	-	39.970	92.9	
녹지용지	3,075	-	3,075	7.1	경관녹지

2.2.2.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합계	-	• 지적 현황측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상 선형 변경(면적 변경없음)
공동주택용지	-	
녹지용지	-	

2.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2.3.1.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녹지	경관녹지	속초시 교동 785-2번지 일원	3,075	-	3,075	속초시고시 제2022-135호 (2022.9.2.)	

2.3.1.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녹지	• 경관녹지 선형 변경 - 면적 : 3,075㎡	• 지적 현황측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)상 선형변경(면적 변경없음)

2.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고
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㎡)	
합계		43,045		-	43,045	
-	A	39,970	1	속초시 금호동 산276-1번지 일원	39,970	공동주택용지
	B	3,075	1	속초시 교동 785-2번지 일원	3,075	녹지용지

※ 지적 현황측량에 따라 선형변경으로 조서내용상 변경없음

2.5.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 (가구번호)	구분		결정내용	비고
-	A	용도	허용용도	•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,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	
	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폐율		• 30% 이하	
		용적률		• 300% 이하	
		높 이		• 평균 30층 이하	지상 28~33층
		배 치		-	
		형 태		-	
		색 채		-	
		건축선		• 건축한계선 : 6m	주1)

주1)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여 적용함.

※ 지적 현황측량에 따라 선형변경으로 조서내용상 변경없음

속초시 공고 제2023-607호

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3년 6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2. **제정이유** : 속초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가. 목적과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저소득주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(안 제3조)

다.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규정(안 제4조)

라. 지원대상자 지원절차 및 결정방법 규정(안 제5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 · 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속초시청 복지정책과(생활보장팀)

2) 연락처 : 033-639-2183 (FAX 033-639-2380)

3) 전자메일 : young7707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(033-639-21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급자” 및 “차상위계층“이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제2의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,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2. 한부모가족
3.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생계관련 지원
2. 의료관련 지원
3. 주거관련 지원
4. 교육관련 지원
5. 폭염·월동 대책비
6. 해산(解産) · 장제(葬祭)비
7. 명절 · 연말 위문금품
8.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, 동장은 그 관내에서

신청자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.

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, 현장확인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을 따른다.

제6조(지원중지 및 환수)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2. 소득, 재산,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
3.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